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196호
------	-------

<p>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

제 출 자	건설도시국장
제출연월일	2022. 11. 14.

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6호
------	-------

제출연월일 : 2022. 11. 14.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과 장

1. 제안이유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논산시 교통약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의 완성과 포용적 교통복지의 실현을 위해 조례명을 개정하고, 지원이 불가능했던 시 거주 외국인(재외동포 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명 개정 : “노인 등” 삭제
- 나.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 범위 확대 : 외국인 추가(안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1.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충청남도 소관 실과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041-635-4564)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를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의”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인 등”이란”을 ““이용지원 대상자”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조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다.

제2조제3호 중 “노인 등”을 “이용지원 대상자”로 하고, 같은 호 및 제4호 중 “시내(농어촌)버스”를 각각 “버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노인 등”을 “이용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교 통 과 장
안	교 통 지 원 팀 장
자	담 당 자
	김 영 남 (746-628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u></p>	<p><u>논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논산시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의</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노인 등”이란</u>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서 신설></p>	<p>제2조(정의) -----</p> <p>1. (현행과 같음)</p> <p>2. <u>“이용지원 대상자”는</u> -----</p> <p>----- 단,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p>

가. ~ 사. (생략)

3.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 라 한다)”란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조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다.

가. ~ 사. (현행과 같음)

3. -----

--- 이용지원 대상자-----
----- 버스-----

--.

4. -----
----- 버스 -----
-----.

제3조(책무) ① ----- 이용지원 대상자-----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이용지원 대상자’ 에 “시 거주 외국인” 이 포함됨에 따라 비용 증가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전제

- 교통지원 대상 시 거주 외국인 (단위 : 명)

구 분	총 계	7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화유공자	장애인
2022년	11	11	0	0
2023년	13	13	0	0
2024년	15	15	0	0
2025년	17	17	0	0
2026년	20	20	0	0

※자료: 2022년 9월말 기준 논산시 인구통계자료

나. 추계의 결과

- 교통지원 금액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세출	일반회계	8,535	1,244	1,470	1,638	1,922	2,261
	만75세 이상	8,535	1,244	1,470	1,638	1,922	2,261
장 애 인		0	0	0	0	0	0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0	0	0	0	0	0

※ 산출기초(2022년 기준)

○ (1일 왕복요금×365일×인구)×경제활동(13%)×생존율(96.3%)×버스이용율(82.5%)

⇒ (3,000원×365일×11명) × 13% × 96.3% × 82.5% = 1,244천원

3. 작성자

교통과장 윤기암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